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27

2024년 5월 3일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우형찬 의원(찬성자 12명)

나. 발 의 일 : 2024년 4월 3일

다. 회 부 일 : 2024년 4월 8일

라. 상 정 일 :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4년 4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우형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, 교육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, 여성가족부는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반면, 서울시는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해, 조사 기간의 차이 및 정확한 수요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.

○ 이에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, 타 유관기관 등에 보다 최신식의 실태조사 결과치를 제공하고, 타 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또한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주요사항을 명시해,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

나. 주요내용

○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하고, 실태조사 사항 등에 대해 신설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별첨 비용추계서 참조).

다. 입법예고(2024.4.12. ~ 4.16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가. 개요

○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, 실태조사 주기(2년)와 주요내용을 규정한 안 제5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○ 안 제5조제1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,

- 안 제5조제2항(제1호 내지 제7호)은 실태조사시 포함되는 항목(학업중단 시기와 원인, 건강상태, 가족·친구관계, 경제상태, 진로, 지원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)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제3항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체 없이 연계하고,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·② (생 략) 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	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④ (생 략)	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<신 설>	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 1.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.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태 3.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.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.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 ~ 제16조 (생 략)	제6조 ~ 제17조 (현행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

※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(평생교육국)는 본 조례에 따라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에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로, 생활 실태,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

<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 현황 >

○ 사업명: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
○ 사업목적
-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
-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적 욕구, 청소년시설 인지도 및 이용현황, 만족도를 파악하여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

○ 추진현황: 2019,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
○ 사업내용: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추진,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적 욕구, 누적 총계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재정비
○ 사업예산: 100백만원(실태조사 용역)

출처 : 2022년 본예산 평생교육국 사업설명서

<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(2022.12.30.) >

○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30,540명 추정(출국자 44,497명 제외)

※ 학업중단률 전국 0.8%, 서울시 1.1%

○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청소년 이행 경로 유형

- 학업형(검정고시 등) 64.2%, 무업형 13.3%, 진로직업형 11%, 기타(청소년 시설 이용 및 운동·악기 등 취미활동, 군복무 등) 11.5%

○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청소년 생활 실태(연령별 응답률 최고 항목)

- (7~12세) 대안교육기관 등교 45.7%, (13~15세) 집에서 공부 36.9%, (16~18세) 대학입시 공부 25.4%, (19세 이상) 아르바이트 및 취업 18%

○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

- (학습) 검정고시 지원·입시정보 제공·대학진학 상담, (취업) 자격증 취득 지원·직업 및 진로적성 상담, (건강 및 상담복지) 건강검진 제공·고민 상담 등

출처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

※ 정부(여성가족부)는 2021년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제6조 실태조사 기간 3년 → 2년 변경, 2021.09.24. 시행)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.

< 2022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>

○ 조 사 명: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

○ 법적근거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○ 조사대상: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
＊ 7개 유형 기관 238개소 내 학교 밖 청소년 3,000명(표본수)

○ 조사기간: 2023년 6월 ~ 12월

○ 조사기관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한국리서치

※ 이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내일이룸학교, 청소년 쉼터, 소년원, 보호관찰소, 대안교육기관 및 검정고시 접수장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

출처 :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www.mogef.go.kr)

※ 실태조사의 개념과 실행주기

·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(학교 밖 청소년)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
· 실태조사 주기는 조사할 대상의 성격과 특성, 규모와 구조, 대상의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, 대상과 대상의 환경 등이 변화가 적을 경우, 조사 주기를 장기로, 그 반대의 경우는 단기로 설정할 수 있음.

·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, 서울특별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“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, 개개인 또는 유사한 환경 등으로 세분”하여 지원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바, 안정적 정책 마련,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시점까지는 실태조사 주기를 단기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에서 학습, 취업, 진로 및 재능 개발 등 각각 다른 환경에 있고 전체 조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, 조사 주기를 정부(여성가족부) 조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사 결과의 비교·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도출 및 연계성을 제고하고, 보다 정확하고 연속성 있는 조사 시행과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임.

나. 세부내용 검토

○ 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(3년 → 2년)할 경우 정부(여성가족부),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주기 차이로 발생하는 상이한 결과와 현황 등을 최소화하고 각 조사결과 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학교 밖 청소년에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○ 다만, 안 제5조제1항 신설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경우(3년 → 2년) 10년간(2024년 ~ 2034년) 2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.

※ 실태조사를 2년 단위 실시하는 경우 1회 1억원의 예산(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기준)이 소요됨

< 실태조사 기간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비교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합 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2033	2034
현 행	4	1	-	-	1	-	-	1	-	-	1	-
개 정	6	1	-	1	-	1	-	1	-	1	-	1

※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예산 참고

○ 안 제5조제1항 실태조사 주기 변경(3년 → 2년)에 따라 정부(여성가족부)와 동일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(1안)와 1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(2안) 등 효과적인 실태조사 실행연도와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,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한 적정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< 정부 및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실시 주기 예상안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정 부	○	-	○	-	○	-	○
서울(1안)	○	-	○	-	○	-	○
서울(2안)	-	○	-	○	-	○	-

※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예산 참고

○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정부(여성가족부)와 동일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(1안) 양자 간 비교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 측정 방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조사 자료를 얻을 수 없고 당해연도 결과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, 정부(여성가족부)의 조사 대상 및 내용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이 중복 투입 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.

○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정부(여성가족부)와 다른 연도에 실시하는 경우(2안) 중복 예산 및 인력 투입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 조사 결과의 연속성, 단년도 사업 편성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으나,

- 정부(여성가족부)의 조사 목적·문항·결과 등이 상이한 경우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며,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자료가 정부(여성가족부)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고 조사 결과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어, 정부와 협의 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각각의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안 제5조제2항은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실태조사 대상(학교 밖 청소년)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제5조(실태조사)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
2.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상태
3.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
4.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
5.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
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안 제5조(실태조사)제3항은 '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'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5조(실태조사)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○ 안 제5조제3항은 ①청소년 지원센터 연계, ②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보다는 지원사업 또는 청소년 보호 등과 연관된 규정으로 보이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 등은 본 조례 제3조,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어,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- 또한, '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'의 구분 또는 기준은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며,

- 발견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”학업 복귀“가 아닐 수 있음에도 지원의 목적에 학업 복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실태조사 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발견의 주체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이며, 실태조사 기관과 담당자가 즉각적인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에 한계가 있고,

-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바,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성, 실태조사의 사업 범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○ 결론적으로, 본 개정안은 정부(여성가족부)와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주기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비교·분석 가능한 결과치 제공과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등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다만, 실태조사의 시행시기를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 재원의 부담, 중복적 지원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형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27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 : 우형찬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성준, 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 박유진, 송도호, 송재혁, 아이수루, 이소라, 이용균, 임규호, 전병주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, 교육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실태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, 여성가족부는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반면, 서울시는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해, 조사 기간의 차이 및 정확한 수요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

○ 이에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, 타 유관기관 등에 보다 최신식의 실태조사 결과치를 제공하고, 타 기관에서 보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또한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주요사항을 명시해,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

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하고, 실태조사 사항 등에 대해 신설함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
2.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· 정신적 건강상태
3.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
4.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
5.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
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

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 · ② (생 략)	**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**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매 3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<신 설>	**제5조(실태조사 등)**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 1.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.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· 정신적 건강상태

	3.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.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.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,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 ~ **제16조** (생 략)	**제6조** ~ **제17조** (현행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(실태조사 등)

-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비용

※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제3항[1]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,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여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○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비용(안 제5조)

나. 전제

○ (실태조사) 기존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 비용(붙임 참고) 활용

○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2년의 주기로 소요됨을 전제

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
○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○ 서울시 동일사업(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) 자료 활용, 서울시 담당부서(청소년정책과) 문의 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**303,600천원**(연평균 60,720천원) / 추가소요비용 = **101,200천원**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비용 (안 제5조)	101,200	-	101,200	-	101,200	303,600
	소계(a)	101,200	-	101,200	-	101,200	303,6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총 비용(a-b)		101,200	-	101,200	-	101,200	303,600

자료: 서울시 평생교육국

1) 「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」 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③ 시장은 **매 3년 마다**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4. 덧붙이는 의견 : 실태조사 비용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[2] 중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	이 정 수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	☏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비용(안 제5조)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 = **303,600천원**(연평균 60,720천원) / 추가소요비용 = **101,200천원**

=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1회 비용 × 3회 실시

= (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+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[3]) × 3회 실시

= (100,000천원 + 1,200천원) × 3회 실시

○ 실태조사 주기 변화에 따른 소요금액 비교

연도		현행 같은 조례	본 안
2022년	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
2023년		-	-
2024년		-	-
추계기간	2025년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
	2026년	-	-
	2027년	-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
	2028년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	-
	2029년	-	실태조사 시행(101,200천원 소요)

- 본 안 제5조(실태조사 등) 따라 2년마다 실태조사 시 같은 기간 대비 **101,200천원**이 추가로 소요됨

2) 실태조사 금액 책정 차이 有
- 2019년 서울시 평생교육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: 200,000천원
- 2022년 서울시 평생교육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: 100,000천원

3) 부서 사무관리비로 책정

〔**붙임**〕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업(안 제5조 관련)

☐ **사업목적**

○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

○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적 욕구, 청소년시설 인지도 및 이용현황, 만족도를 파악하여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

☐ **사업내용**

○ 사업기간 : 2022.1월 ~ 12월

○ 지원대상 :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

○ 사업의 주요내용 : **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및 실태조사**

☐ **산출근거**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2022년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100,000,000	= 100,000천원

자료 : 2022년 서울시 평생교육국 예산설명서 발췌

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추진 계획

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이행경로 및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

1 추진개요

☐ 추진근거

○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

– 시장은 매 3년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차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('19.12.)

❖ 학령인구 및 학생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적 증가
- 학업중단 학생 :10,950명('17)→11,546명('18)→11,837명('19)→11,886명('20)→6,418명('21)
※ '21년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 감소 추정

❖ 학업중단 이후 이행경로 : 학업형 60.6%, 진로직업형 24.3%, 무업형 15.1%

❖ 학업중단 후 어려움
-'사람들의 선입견, 편견, 무시'(47.0%), '무기력'(37.0%), '진로 찾기'(36.3%), '혼자라는 불안'(33.5%), 친구관계 단절'(32.8%), '도움 받을 곳이 없음'(28.2%), '부모와의 갈등'(25.3%), '취업 어려움'(23.2%) 등

❖ 자치구별 규모 : 서초구(8,213명), 노원구(6,383명), 송파구(6,324명), 강서구(5,344명)
- 부적응 학업중단 : 노원 〉 성북 〉 서초 〉 강서 〉 종로
※ 해외출국 학업중단 : 강남 〉서초 〉 송파 〉노원

☐ 연구 필요성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매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

–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 및 실태, 활동상황, 정책적 욕구, 지원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

○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

– 다문화, 부적응 청소년의 증가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교육, 직업훈련, 보호,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시책 발굴 필요

자료 : 2022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추진 계획(청소년정책과-20206) 발췌